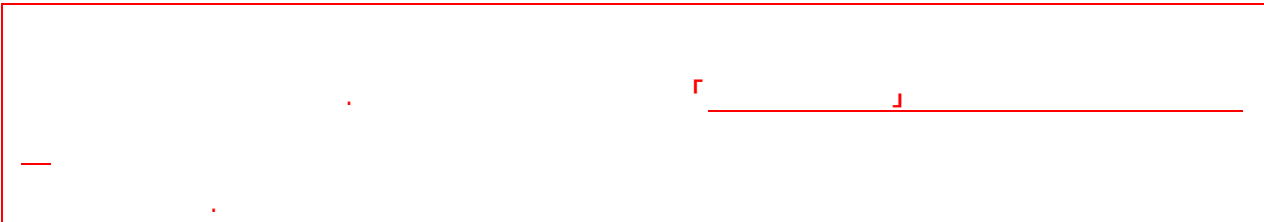




이 투자설명서는 “세이고배당주식형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회사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회사명	세이고배당주식형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명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식회사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보생명보험(주)(☎ 02-721-2552, www.kyobo.co.kr)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 교보증권(주)(☎ 1544-0900, www.iprovest.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번지 ▪ (주)우리은행(☎ 1588-5000, www.wooribank.com)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번지 ▪ 키움증권(주)(☎ 02-3787-5000, www.kiwoom.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 (주)하나은행(☎ 1588-1111, www.hanabank.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 한국씨티은행(주)(☎ 02-3455-2114, www.citibank.co.kr) 서울시 중구 다동 39번지 ▪ 한국투자증권(주)(☎ 1544-5000, www.truefriend.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p>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p> <p>※ 판매회사는 투자회사주식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회사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8년 10월 21일
투자설명서 비치 ·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 · 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eiak.com)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목 차 (CONTENTS)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회사의 기본정보: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I. 투자회사의 개요

상호, 존립기간, 분류, 자산운용회사, 최초 설립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산사유

II.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주주 유형,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평균 수익률, 연도별 수익률 추이)

III. 수수료 · 보수, 과세

주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주식의 매입 · 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 이 펀드를 상세히 알고 싶다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IV. 매입 ·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매입관련 유의사항, 환매관련 유의사항,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I. 자산운용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III. 자산보관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제4부. 주주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I. 주주의 권리

주주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정기 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회사의 개요(☞ 본문 6쪽)

1. 상 호 : 세이고배당주식형투자회사 (**자산운용협회코드: 34158**)
2. 존립기간 : 정관 제65조 규정에 의한 해산일까지
3. 분 류 : 증권투자회사, 추가형, 개방형, 주식형
4. 자산운용회사: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 본문 6~10 쪽)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자산의 70% 이상을 주로 고배당주 등의 국내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 등락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비교지수: KOSPI 수익률 * 100% (비교지수는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홈페이지(www.seiak.com)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투자전략	- 주식시장의 하향 리스크에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고배당 주식, 우량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에 집중 투자하여 자본이익과 배당이익을 동시에 추구
3. 주요 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 주식 등 보유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조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회사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은 위험 수준 - 주식시장 위험을 인지하는 투자자로서, 주식의 매매에 따른 자본이득과 배당수익을 원하는 자, 주된 투자대상이 고배당주이므로 주식시장 대비 상대적인 Low Risk-Medium Return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주식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seiak.com) 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08.03.31)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팀운용)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재동	62년생	상무	53개	20,510억좌	미 로체스터대학교 MBA 주식운용(CJ자산운용 0.6년, SH자산운용 1.3년, 한국투자신탁운용 2년,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2008.07~)

*투자회사의 운용은 팀운용이며, 상기인은 투자회사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도	최근1년 2007.3.11~ 2008.3.10	최근2년 2006.3.11~ 2008.3.10	최근3년 2005.3.11~ 2008.3.10	최근5년 2003.3.11~ 2008.3.10	설립일 이후 2002.3.11~ 2008.3.10
투자회사	17.43	11.17	14.94	27.00	18.15
비교지수	14.16	10.96	17.62	24.46	10.96

*비교지수 : KOSPI 수익률 * 100% * 단위 : %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본문 10~14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주주에게 직접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주금납입금액의 1%	
	환매수수료	-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자산운용 보수	연0.70%
		판매 보수	연1.10%
		보관 보수	연0.04%
		사무관리 보수	연0.016%
		보수합계	연1.856%
	기타비용 ²⁾	연0.322%	
총보수·비용비율 ³⁾		연2.178%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주식매입시점에 일회적으로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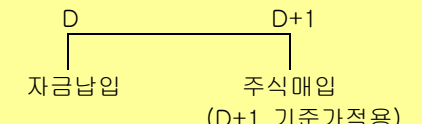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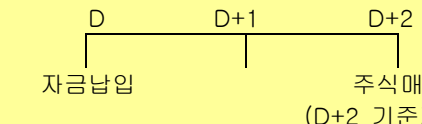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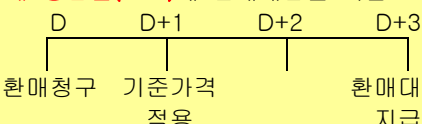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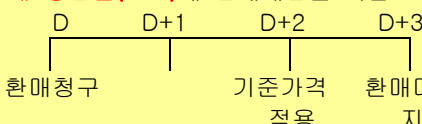
주 2) 유가증권 거래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펀드의 과거실적추정치임

주 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내며, 실제 지출되는 비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과세 : 투자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년 10월 현재 개인 15.4%)**을 부담합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3년이상 적립식 장기투자자의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혜택(농특세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반드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회사의 주식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 후
매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4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4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회사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 (점포명)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 (은)는 (고객 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취득권유인_____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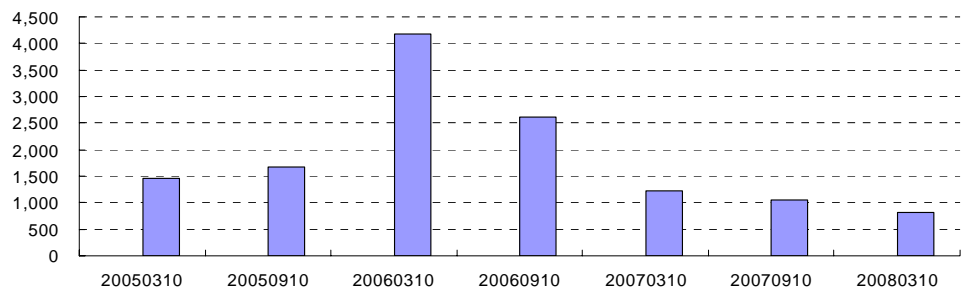
제1부 투자회사의 기본정보

. 투자회사의 개요

1. 상호 세이고배당주식형투자회사(펀드코드 : 34158)
2. 존립기간 정관 제65조규정에 의한 해산일 까지(7.해산사유 참조)
3. 분류 증권투자회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4. 자산운용회사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
5. 최초설립일 등 연혁
2002.3.11. 세이고배당주식형펀드 설립
2002.3.29. 금융감독원에 등록
2004.6.22. 세이고배당주식형투자회사로 상호변경

6. 수탁고 추이

(단위: 억원)



7. 해산 사유

-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해산사유 발생
- 주주총회의 결의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금융감독원의 등록취소의 통지

.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회사의 목적은 회사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국내주식 중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자산운용회사가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고배당주”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 등락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거래소시장 및 협회등록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
- 과거 평균배당률이 안정적이거나 상승추세인 주식
- 배당성향이 인색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주식
- 잉여 현금흐름이 대체로 (+)인 주식
-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주식

그러나 당해 회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나 운용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교지수: KOSPI 수익률 * 100%

(비교지수는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홈페이지(www.seiak.com)에서 확인 가능)

2. 주요투자전략

회사자산의 70%이상을 국내주식에 집중 투자하되 상대적으로 증시변화에 따른 하향 리스크가 작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고배당주식에 주식편입비의 60%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1) 주식투자

운용전략

- 종목별 시가비중을 감안한 시장전체를 추종하는 투자전략을 지양하고 시장과 차별화된 Portfolio 구성
- 주식시장의 하향 리스크에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고배당 주식, 우량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에 집중 투자하여 자본이익과 배당이익을 동시에 추구

자산배분 전략

- 회사 자산의 7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되, 고배당주에의 투자는 주식편입비의 60%이상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하고, 전략적 차원의 자산배분 효과를 추구

투자대상 종목

- SEI Asset Korea의 Valuation Model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자산운용회사가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고배당주”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 거래소시장 및 협회등록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
- 과거 평균배당률이 안정적이거나 상승추세인 주식
- 배당성향이 인색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주식
- 잉여 현금흐름이 대체로 (+)인 주식
-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주식

(2) 파생상품

선물투자전략

- 기초자산의 적극적 위험관리 수단으로 보유 기초자산 한도 내에서 헷지 전략과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따른 매매차익 추구를 병행합니다. 다만, 기초자산의 헷지와 관련 없는 매매차익 추구 목적의 투자는 제한적으로 수행하여 지나친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위험노출을 억제합니다.

옵션투자전략

- 기초자산 또는 선물 포지션의 헷지 수단으로 이용하며 매매차익 추구 목적의 투자는 제한적으로 수행하여 지나친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위험노출을 억제합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투자전략(15쪽)’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투자위험

(1)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

회사와 같은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2) 시장 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3) 종목 위험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 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만,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 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하향리스크에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배당주의 특성상 강세장에서는 일반주식의 수익률에 못 미치는 Low Risk-Medium Return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러한 배당주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사자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자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16쪽)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회사는 주로 주식 등에 70%이상 투자를 통하여 유가증권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하며, 주식시장의 변동, 시중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위험 등급은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 위험을 인지하는 투자자로서, 주식의 매매에 따른 자본이득과 배당수익을 원하는 자, 주 투자대상이 고배당주이므로 주식시장 대비 상대적인 Low Risk-Medium Return 성향의 투자자, 배당주의 특성상 충분한 배당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60%
2		50%
3		50%

4		
5		MMF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공고일의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순자산가치"이라 한다)을 공고일 전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seiak.com)·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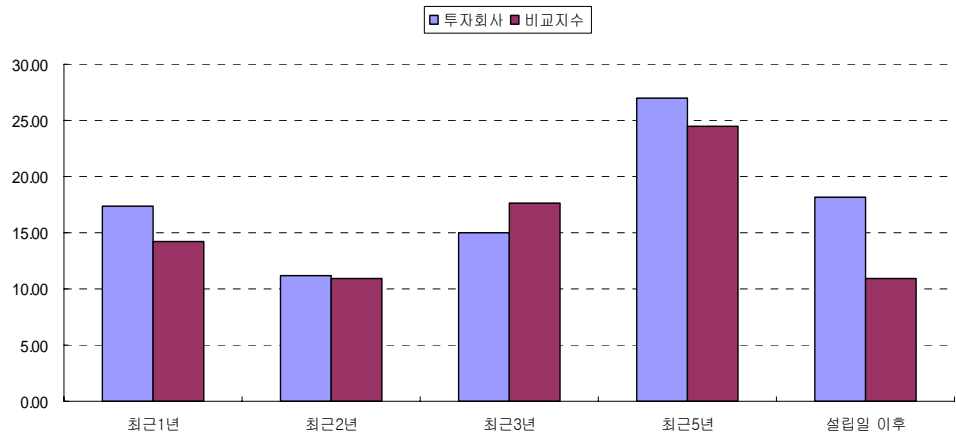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경력(2008.03.31)
김재동	주식 운용팀	상무	20,510억좌	미 로체스터대학교 MBA 주식운용(CJ 자산운용 0.6년, SH 자산운용 1.3년, 한국투자신탁운용 2년,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2008.07~)

7. 투자실적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연도	최근1년 2007.3.11~ 2008.3.10	최근2년 2006.3.11~ 2008.3.10	최근3년 2005.3.11~ 2008.3.10	최근5년 2003.3.11~ 2008.3.10	설립일 이후 2003.3.11~ 2008.3.10
투자회사	17.43	11.17	14.94	27.00	18.15
비교지수	14.16	10.96	17.62	24.46	10.96

*비교지수: KOSPI 수익률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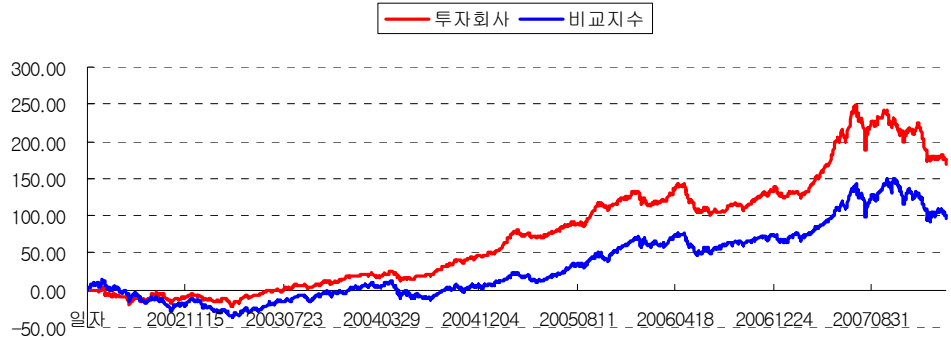


□ 연도별 수익률
(단위: %)

연도	최근1년차 2007.3.11~ 2008.3.10	최근2년차 2006.3.11~ 2007.3.10	최근3년차 2005.3.11~ 2006.3.10	최근4년차 2004.3.11~ 2005.3.10	최근5년차 2003.3.11~ 2004.3.10
투자회사	17.43	5.24	22.87	47.35	47.68
비교지수	14.16	7.84	32.18	14.00	60.96

*상기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운용실적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미래의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co.kr) 전자공시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KOSPI 수익률 * 100%



· 수수료 · 보수, 과세

1. 주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주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주금납입금액의 1%	주식청약시
	합계	-	-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평잔의 연 0.70%	설립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평잔의 연 1.10%	
	자산보관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평잔의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평잔의 연 0.016%	사유발생시
	기타비용 ¹⁾	순자산총액의 평잔의 연 0.322%	
총 보수 · 비용비율 ²⁾	순자산총액의 평잔의 연 2.178%	-	

1)유가증권 거래비용 등 경상적 ·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과거 실적의 추정치임
2)지출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

<1,000만원 투자시 비용 예시>
(단위: 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223,245	703,780	1,233,569	2,807,950

*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회사가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 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회사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각 결산기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투자회사의 경우 환매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 개인 주주에 대한 과세

배당소득세

- ① 회사와 같은 개방형 투자회사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환매할 경우, 환매시의 이익은 장외주식의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 ② 배당소득의 과세표준에는 투자회사 보유주식(상장 주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지수선물·옵션의 매매·평가 차익은 제외되며,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보유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보유채권의 양도차익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상품선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됨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① 개인투자자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투자회사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개인투자자는 종합소득신고의 의무를 지게 되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개인투자자가 투자회사의 대주주(투자회사 지분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한 주주)인 경우에도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없음

- 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① 법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 ② 법인주주는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배당세액공제도 허용되지 않으며, 투자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특수관계자 소유지분과 합하여 투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주주로서 기관투자자에 해당되면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표에서 제외

※상기내용은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이 투자회사(펀드)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회사의 주주(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이상 적립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주주가 이 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펀드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주주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주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

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①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②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 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 소득공제 비율

① 1년차: 기간 중 불입액의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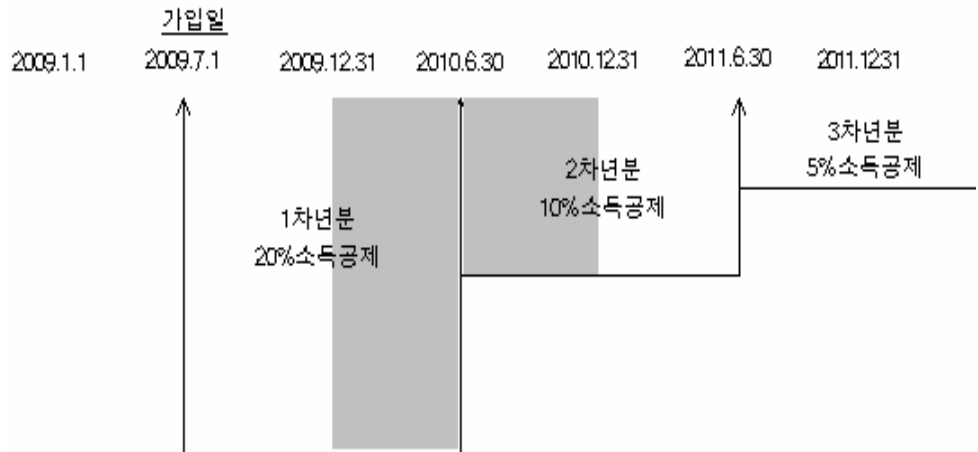
② 2년차: 기간 중 불입액의 10%

③ 3년차: 기간 중 불입액의 5%

- 소득공제 사례 :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① 2009년 소득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② 2010년 소득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주식의 매입 · 환매, 분배

1. 매 입

□ 주식의 매입절차 등

(1)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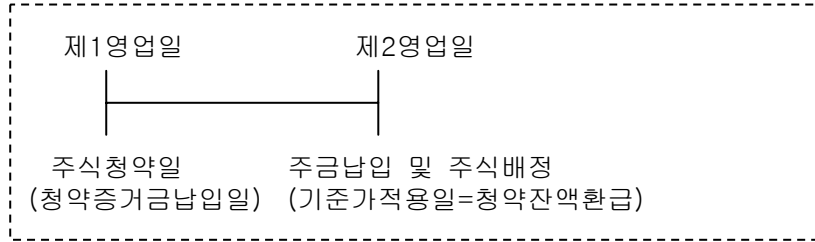
(2) 청약취급처: 판매회사 본·지점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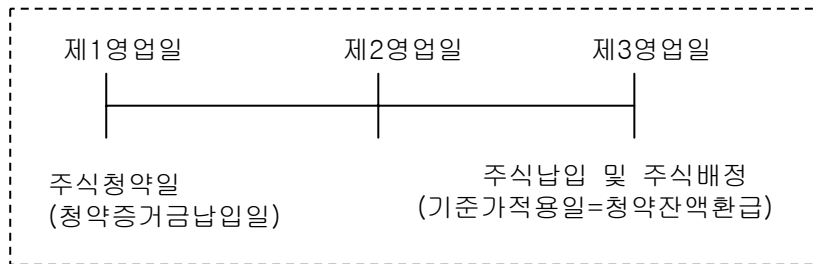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주식 매입시
기준가격 등

(1) 15시(오후3시) 이전 청약을 신청한 경우



(2) 15시(오후3시) 경과 후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 2 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매입관련유의사항' (19쪽)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 매

□주식의 환매방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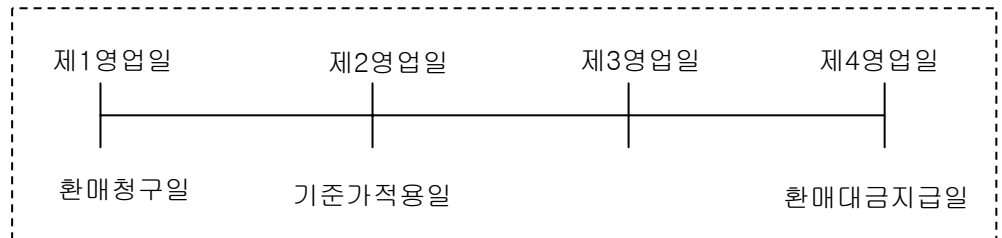
투자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식을 매입한 판매회사에 가서 영업시간중에 보유주식의 전부 혹은 일부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찾고자 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하고자 하는 회사 주식의 수를 청구하는 것임

□ 주식의 환매시
기준가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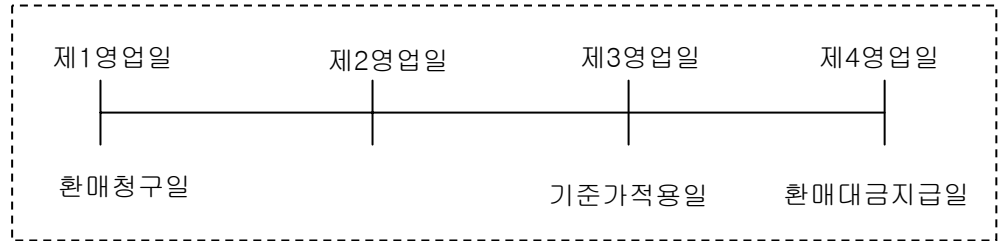
(1) 15시(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간접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연기, 부분환매, 환매제한 등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 2 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환매관련유의사항' (19~21쪽)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 (1) 회사는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결산 분배금 지급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3) 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 2 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중 '3.분배관련유의사항'(2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

.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 자 전 략

회사자산의 70%이상을 국내주식에 집중 투자하되 상대적으로 증시변화에 따른 하향 리스크가 작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고배당주식에 주식편입비의60%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해 회사는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나 운용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교지수: KOSPI 수익률 * 100%

(비교지수는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홈페이지(www.seiak.com)에서 확인 가능)

(1) 주식투자

운용전략

- 종목별 시가비중을 감안한 시장전체를 추종하는 투자전략을 지양하고 시장과 차별화된 Portfolio 구성
- 주식시장의 하향 리스크에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고배당 주식, 우량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에 집중 투자하여 자본이익과 배당이익을 동시에 추구

자산배분 전략

- 회사 자산의 7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되, 고배당주에의 투자는 60%이상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하고, 전략적 차원의 자산배분 효과를 추구

투자대상 종목

- SEI Asset Korea의 Valuation Model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자산운용회사가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고배당주”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 거래소시장 및 협회등록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
- 과거 평균배당률이 안정적이거나 상승추세인 주식
- 배당성향이 인색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주식
- 잉여 현금흐름이 대체로 (+)인 주식
-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주식

(2) 파생상품

선물투자전략

- 기초자산의 적극적 위험관리 수단으로 보유 기초자산 한도 내에서 헷지 전략과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따른 매매차익 추구를 병행합니다. 다만, 기초자산의 헷지와 관련 없는 매매차익 추구 목적의 투자는 제한적으로 수행하여 지나친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위험노출을 억제합니다.

옵션투자전략

- 기초자산 또는 선물 포지션의 헷지 수단으로 이용하며 매매차익 추구 목적의 투자는 제한적으로 수행하여 지나친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위험노출을 억제합니다.

2. 투자 위험

회사의 순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는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투자위험

(1)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

회사와 같은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2) 시장 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3) 종목 위험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만,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 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하향리스크에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배당주의 특성상 강세장에서는 일반주식의 수익률에 못 미치는 Low Risk-Medium Return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러한 배당주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사자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자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계약 종료 시점이 있으므로, 투자 파생상품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동 계약을 청산할 경우 차월물 등으로 변경해야 하나, 이 경우 추가적 비용 발생 및 차월물과 당월물과의 가격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파생상품 투자 손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헷지전략과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함에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움직일 경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다른 주식 관련 투자와 마찬가지로 회사 주식의 가치가 항상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과 회사의 투자목적이 정확히 달성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u>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경우 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관련자도 투자자의 투자원본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함을 주지하여야 합니다.</u>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국내에서 발행 및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한함)	70% 이상 (단, 고배당주에의 투자는 주식편입비의 60%이상)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것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것을 포함) - 상기에서 정의된 “주식”중 직전 회계연도 결산 배당금 기준 배당수익률이 해당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인 주식을 “고배당주”라 한다
② 양도성예금 증서(CD)	40% 이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시행령(이하 이투자설명서에서 “법시행령”이라 합니다.)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중개한 양도성예금증서
③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	위탁증거금합계 액이 자산총액 의 15%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④ 수익증권	5%이하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수익증권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하 이 투자설명서에서 “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 법제 137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⑤ 투자증권 등의대여	투자증권총액 의 50%이하	법시행령제 72 조제 2 호 규정에 의하여 투자증권을 대여하는 것
⑥ 투자증권 등의차입	회사자산총액 의 20%이하	법시행령제 72 조제 2 호의 2 규정에 의하여 투자증권을 차입하는 것
⑦ 기타	법시행령 제 108 조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가능	

위 투자대상 중 ①호 내지②호의 거래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3) 및4)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1) 회사 성립 후 최초운영개시일로부터 1월간
- 2) 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1월간
- 3)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환매청구가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4) 회사자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한도 및 유예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을 반드시 참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회사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자산보관회사에 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합니다.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	최초설정일 로부터 1월 간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등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회사재산 총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 간
단기대출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의 평가

회사 자산의 평가방법 및 그 시기는 법 제95조 및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 평가와 관련된 관련법령 또는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동 개정된 바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외화표시유가증권으로 상장주식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자산평가의 예외>

가. 상기에서 규정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 등은 법인이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당사는 매 분기별로 펀드매니저, Analyst, 트레이더의 Broker 평가회의에 따라 중개회사를 평가하고 다음 분기 거래 중개회사를 결정하며, 결정에 따른 중개회사별 거래순위 guideline을 월별로 점검하고 차이, 원인 등을 분석합니다

구 분	선 정 기 준
저비용	-국내 채권시장의 특성상 brokerage fee는 증권사별 경쟁에 의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래에 따른 명목 비용은 동일하지만 비용(cost) 개념을 단지 brokerage fee로 한정하지 않고, 거래 지연에 따른 시간비용 (timing cost)과 체결실패에 따른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할 경우 중개회사별로 거래비용(cost)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능력	-호가의 정확성과 신속한 체결 능력이 증권사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중개회사의 팀워크와 개별 브로커의 능력을 감안하여 거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중개회사의 안정성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고려하여, 매매와 관련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선정합니다.

IV. 매입 ·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1) 주식유지 최저한도: 1만주(환매청구 등의 사유로 보유주식수가 1만주 미만인 경우 그 1만주 미만의 잔여 주식도 환매청구 해야 함)
- (2) 기타: 회사는 회사자산 운용상의 필요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회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 또는 계속해서 회사 주식의 매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 주식의 환매연기

- (1)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식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 회사 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회사 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 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주주의 이익 또는 주주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투자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회사 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 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주주간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가), (나)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2) 주식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가)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다)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3)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주식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4)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가)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5)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주주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가) 환매연기 주주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나) 환매연기 주주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회사는 환매연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상기(1), (4), (5)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부분환매

(1) 회사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된 환매연기사유 해당 자산만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분리 전 회사의 지분에 따라 별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을 계속하여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주주, 자산보관회사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

에 게시하여야 함.

□ 환매제한

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의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2) 해산한 경우
- (3) 회사의 순자산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4) 결산일 직전 제2영업일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 (5)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3. 분배관련 유의사항

- (1) 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지급일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배금은 순자산총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내로 합니다.
- (2) 회사의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 (3)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산분배금 및 청산분배금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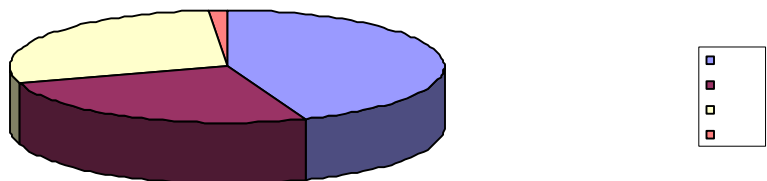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www.seiak.com)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87번지 (02-3788-0500)

2. 주요업무	<p>-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기타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p> <p>-자산운용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p> <p>-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회사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p> <p>-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p> <p>-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p>
---------	---

3.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6.03.31	'07.03.31	항 목	'05.4.1 ~'06.3.31	'06.4.1 ~'07.3.31
	유동자산	20,662	26,767	영업수익	14,447	14,238
	고정자산	2,020	1,885	영업비용	6,082	5,898
	자산총계	22,682	28,652	영업이익	8,365	8,339
	유동부채	2,267	1,646	영업외수익	7	794
	고정부채	0	0	영업외비용	11	23
	부채총계	2,267	1,646	경상이익	8,361	9,111
	자본금	12,000	12,000	특별손익	0	0
	이익잉여금	8,415	15,006	법인세차감	8,361	9,111
	0	0	전순이익			
자본총계	20,415	27,006	당기순이익	6,060	6,591	

4. 운용자산규모 (2008.3.31일 기준) (단위: 억좌)	구분	주식	혼합	채권	MMF	파생	재간접	특별자산	기타	합계
	수탁고	6,067	3,547	3,897	-	-	201	-	-	13,712

* 투자일임 포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08.03.31)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팀운용)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김재동	62년생	상무	55개	20,510억좌	미 로체스터대학교 MBA 주식운용(CJ자산운용 0.6년, SH자산운용 1.3년, 한국투자신탁운용 2년,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2008.07~)

* 투자회사의 운용은 팀운용며, 상기인은 투자회사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 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교보생명보험(주) www.kyobo.co.kr	교보증권(주) www.iprovest.com	(주)우리은행 www.wooribank.com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연락처	02-727-2552	1544-0900	1588-5000
	회사명	키움증권(주) www.kiwoom.com	(주)하나은행 www.hanabank.com	(주)한국씨티은행 www.citibank.co.kr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서울시 중구 다동 39번지
	연락처	02-3787-5000	1588-1111	02-3455-2114
	회사명	한국투자증권(주) www.truefriend.com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연락처	1544-5000		

2. 주요업무

-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 자산보관회사가 배당금 또는 환매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자산보관회사로부터 인도받은 배당금 또는 환매금 등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회사의 해산기준일 현재 회사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관 제 22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자산보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번지 (02-37455-2114)

2. 주요업무

- 회사의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의 보관, 회사의 지시에 따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인수도, 이자 배당금 수령 및 유무상 증자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 회사자산의 운용에 관한 회사의 운용지시를 수행한 후 그 지시가 법령,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운용대상 및 방법, 운용제한 등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회사자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법 제 123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HSBC펀드서비스(주) (www.kr.hsbc.com)
	주 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02-3771-9800)

2. 주요업무

-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이사회 및 감독이사의 업무보조, 문서 사무, 관련회사 관리 업무, 계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합니다.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 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의 결산기마다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회사 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채권평가	NICE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211 광화문빌딩 9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99-3350	02-398-3900	02-3215-1400

2. 주요업무

- 채권평가회사의 투자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간접투자재산의 평가

- ①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
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 ②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 ③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
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4부 주주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주주의 권리

1. 주주총회 및 의결권

□ 주주총회 소집

- 주주총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결의에 따라 법인이 사가 소집하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자산보관회사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1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 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결사항

-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변경
- 회사 존립기간의 변경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 종류의 변경. 다만, 회사 설립시부터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본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 회사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로의 변경
- 기타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는 사항을 의결합니다.

□ 의결방법

- 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합니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상기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주는 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상기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잔여재산분배

- 이 투자회사의 주주는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결산분배금과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분배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산보관회사는 결산에 따른 결산분배금 또는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분배금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자산보관회사가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자산보관회사로부터 인도받은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 등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산일 현재 회사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간접투자자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간접투자자에 관련된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4. 손해배상 책임

-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주주의 주소지 또는 주주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 항제 13 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주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주주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정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산보관회사의 승인을 받아 3 월에 1 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 121 조제 1 항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영업보고서

- 회사는 매 분기 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는 제출 받은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감사보고서

- 회사는 회사 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존립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의 해산일부터 2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회계감사인은 회사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준가격계산서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판매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관회사보고서

-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정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 (2)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3) 주주총회의 의결내용
 - (4) 법 제 132 조제 1 항 각호의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자산보관회사는 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정관의 변경

-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변경.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합니다.
 - (3) 회사 존립기간의 변경
 -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 종류의 변경. 다만, 회사 설립시부터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본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5) 회사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로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 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헤럴드경제신문에 추가로 공고합니다. 다만,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공시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 (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간접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다)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결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전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수시공시사항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주주총회의 의결내용
 -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상기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금융감독원(www.fss.or.kr)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 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주식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회사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자산운용보수, 판매보수, 보관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펀드의 주주의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산보관회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주식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주주의 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정관 변경, 합병 등의 의결과 관련한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재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 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매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회사 명칭 : _____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에게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밀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